

#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81
----------	----

2022. 10. 21.(금)  
산업경제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22년 10월 5일

다. 회부일자 : 2022년 10월 12일

라. 상정일자 : 제40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2022년 10월 13일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농정국장 박해운)

### 가. 제안이유

- 수산식품 거점단지 운영 관리에 관한 효율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을 변경하고, 수산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산식품 거점단지 내 시험연구사업 실시과정에서 생산된 양식수산물의 분양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수산물유통시설 정의 신설(안 제2조제5호)
- 수산식품 거점단지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안 제19조제2항)
- 양식수산물 분양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장, 제25조 및 제26조)
- 오기 정정 및 띄어쓰기 등 조문 정비(안 제23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복순)

#### 가. 제출배경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산물 등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수산식품산업단지 조성에 있어 각종 의사결정 체계를 효율화, 실무화하고 수산식품단지 운영을 안정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나. 주요 검토내용

- 안 제6장, 제25조 및 제26조는 수산식품거점단지 연구소에서 생산한 양식수산물을 유·무상 분양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분양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신설한 것임
- 안 제19조제2항은 운영위원회 구성상 최고 권한 체계가 상향되어 있어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한 권한 체계 완화가 필요하여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현행) <위원장> : 행정부지사, <부위원장> : 농정국장

- (개정) <위원장> : 농정국장, <부위원장> : 축수산과장

#### 다. 종합 검토의견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산물 등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정책적 효과를 제고하고자 양식수산물을 유·무상 분양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적절한 입법이라고 판단됩니다.
- 또한, 우리도 현실에 맞도록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을 실무에 적합하게 개정하여 반영한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수산물유통시설”이란 수산물(가공물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의 도매·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1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부지사가”를 “농정국장이”로, “농정국장”을 “축수산과장”으로, “각호의 구분에 따라 도지사가 위촉한다”를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내수면산업연구소장(이하 “연구소장”이라 한다)
2. 괴산군부군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 가. 수산업 관련 대학·연구소 등에서 교수 또는 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나. 수산업 관련 단체·행정기관 등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다. 그 밖에 도지사가 수산식품 거점단지 운영 관리 분야에 경험과 식견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3조제1항제2호 중 “관계 있는”을 “관계있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자와”를 “자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결정 하여야”를 “결정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참여 할”을 “참여 할”로 한다.

제25조 앞에 “제7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25조 및 제26조를 각각 제27조 및 제28조로 한다.

제27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7장 보칙

제6장(제25조 및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장 수산식품산업 활성화

제25조(양식수산물의 분양) ① 도지사는 수산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구소장이 매년 실시하는 수산식품 거점단지 시험연구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양식수산물을 도내에 소재한 양어장, 수산물유통시설, 그 밖의 수산식품 관련 기관·법인·단체 또는 업체에 분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식수산물의 분양은 유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1. 수산 분야(수산식품 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국·도립 연구기관에 공급하는 경우
2. 그 밖의 수산 분야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대학,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연구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 ③ 제2항에 따른 유상 분양가격은 해당 양식수산물의 생산원가, 시중 유통가격, 다른 수산 분야 국·도립 연구기관의 분양단가 등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제26조(분양계획의 수립 및 홍보) ① 연구소장은 제25조에 따라 양식수산물을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구체적인 분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유상 또는 무상분양 예정 양식수산물의 종류와 물량
2. 유상 또는 무상분양 대상자 선정의 우선순위
3. 분양신청에 필요한 절차, 방법 및 분양시기
4. 분양계획에 대한 공고 등 홍보 방법과 시기
5. 그 밖에 양식수산물 분양에 필요한 사항

② 연구소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양식수산물 분양계획을 도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어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연구소장과 괴산군부군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4. (생략)</p> <p><u>&lt;신설&gt;</u></p>	<p>제2조(정의)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수산물유통시설”이란 수산물(가공물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의 도매·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u></p>
<p>제15조(사용료 납부 등) ①·② (생략)</p> <p>② (생략)</p>	<p>제15조(사용료 납부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 제2항과 같음)</p>
<p>제19조(구성 및 존속기한) ① (생략)</p> <p>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u>행정부지사가</u> 되고, 부위원장은 <u>농정국장이</u>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u>각호의 구분에 따라</u> <u>도지사가</u> 위촉한다.</p> <p>1. <u>수산업 관련 대학·연구소 등에서 교수 또는 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u></p>	<p>제19조(구성 및 존속기한)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농정국장이</u> ----- <u>추수산과장</u>----- -- <u>각호의 사람으로 한다.</u></p> <p>1. <u>내수면산업연구소장(이하 “연구소장”이라 한다)</u></p>

2. 수산업 관련 단체·행정기관 등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수산식품 거점단지 관리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 ⑥ (생략)

제23조(위원의 제척·회피·기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생략)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2. 피산군부군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수산업 관련 대학·연구소 등에서 교수 또는 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나. 수산업 관련 단체·행정기관 등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다. 그 밖에 도지사가 수산식품 거점단지 운영 관리 분야에 경험과 식견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3조(위원의 제척·회피·기피 등) ① -----  
-----  
-----  
-----.

1. (현행과 같음)
2. -----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 있는 사항

3. ~ 5. (생략)

6.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  
관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 관계가 있는  
사항

7. (생략)

②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 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고 그 위원장이나 위원  
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  
고, 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장이  
나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  
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기피 여  
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 할 수  
없고, 기피 결정을 받은 당해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  
한다.

1.·2. (생략)

③ (생략)

제7장 보칙

<신설>

<신설>

----- 관계  
있는 -----

3. ~ 5. (현행과 같음)

6. -----  
----- 자와  
-----

7. (현행과 같음)

② -----  
-----  
-----  
-----  
-----  
-----  
----- 결정하여야 -----

참여할 -----  
-----  
-----.

1.·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삭제>

제6장 수산식품산업 활성화

제25조(양식수산물의 분양) ① 도

지사는 수산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구소장이 매년 실시하는 수산식품 거점단지 시험연구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양식수산물을 도내에 소재한 양어장, 수산물유통시설, 그 밖의 수산식품 관련 기관·법인·단체 또는 업체에 분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식수산물의 분양은 유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1. 수산 분야(수산식품 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국·도립 연구기관에 공급하는 경우

2. 그 밖의 수산 분야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대학,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연구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유상 분양가격은 해당 양식수산물의 생산원가, 시중 유통가격, 다른 수산 분야 국·도립 연구기관의

<신 설>

<신 설>

제25조 · 제26조 (생 략)

분양단가 등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제26조(분양계획의 수립 및 홍보)

① 연구소장은 제25조에 따라 양식수산물을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구체적인 분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유상 또는 무상분양 예정 양식수산물의 종류와 물량
2. 유상 또는 무상분양 대상자 선정의 우선순위
3. 분양신청에 필요한 절차, 방법 및 분양시기
4. 분양계획에 대한 공고 등 홍보 방법과 시기
5. 그 밖에 양식수산물 분양에 필요한 사항

② 연구소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양식수산물 분양계획을 도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제7장 보칙

제27조 · 제28조 (현행 제25조 및 제26조와 같음)

## 관련법령 발췌

###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수산물유통산업”이란 수산물의 도매·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50조(수산물 수요개발 및 소비 촉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비자의 수산물 선호도 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산물의 수요개발과 수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의 수산물 기호 변화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새로운 수산물 수요개발
2.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박람회, 시식회, 요리대회 등의 행사 개최
3.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활동
4. 학교급식 및 단체급식에서 수산물 공급 확대를 위한 사업
5. 그 밖의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유통업자 또는 관련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수산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개정안 비용추계서

## 1. 사업개요

- 수산식품 거점단지 운영 관리에 관한 효율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을 변경하고, 수산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산식품 거점단지 내 시험연구사업 실시과정에서 생산된 양식수산물을 분양하고자 함

## 2. 비용 발생 요인

- 세 입 : 양식수산물 분양 수입
- 세 출 : 운영위원회 수당 지급

## 3. 관련조문

- 안 제 25조(양식수산물의 분양) 양식수산물 유상 분양에 따른 분양 수입
- 안 제 24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 지급

## 4. 비용 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 : 비용은 지속 발생 예상, 추계는 2022~2026년까지 5년에 대하여 실시
- 양식수산물 분양
  - 현재 판매 가능한 성어 무게 기준(400g)으로 연도별 분양 가능 kg 산정
  - 분양 가능 물량이 전량 분양되는 것으로 가정
  - 현 성어 판매 단가(60,000원/kg) 기준으로 분양단가 산정
  - \* 단, 치어를 판매 가능한 성어까지 육성 후 분양하는 상황에서 분양 당시 성어의 정확한 무게 파악이 어려우며, 분양 희망자에 따라 분양량의 변동 가능성 있음. 또한, 분양 당시 유통 판매 단가가 유기적임.
- 운영위원회 수당
  - 위원회 4회 개최, 위원 6인 참석, 출석 수당(100,000원/인), 심사 수당(30,000원/인)
  - 위원 2인 원거리 출석 수당(50,000원/인)

### 나. 추계 결과

- 산출과정
  - 연도별 판매 가능 성어 kg : 320kg/년, 분양단가 : 50,000원/kg
  - 위원 출석 및 심사 수당 : 위원 6인 \* 130,000원/인 \* 4회
  - 원거리 위원 출석 수당 : 위원 2인 \* 50,000원/인 \* 4회
- 산출결과
  - 양식수산물 분양 수입 : 16,000천원/년, 2022년부터 향후 5년간 80,000천원 소요
  - 운영위원회 수당 : 3,520천원/년, 2022년부터 향후 5년간 17,600천원 소요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 100%

##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 6. 작성자 : 내수면산업연구소 내수면산업과장 박종호

##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16,000	16,000	16,000	16,000	16,000	80,000
양식수산물 분양 수입	16,000	16,000	16,000	16,000	16,000	80,000
세 출	4,235	4,235	4,235	4,235	4,235	17,600
위원회 수당	3,520	3,520	3,520	3,520	3,520	15,600
위원회 원거리 출석 수당	400	400	400	400	400	2,000
재원 조달	4,235	4,235	4,235	4,235	4,235	17,600
자체 수입	소 계	4,235	4,235	4,235	4,235	17,600
	지방세	4,235	4,235	4,235	4,235	17,600